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나요?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글 편집실

Q

저는 현장 보건관리자입니다. 회사 특성상 소규모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보건관리자를 전담하는 인력의 TO를 따로 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여러 군데의 소규모 사업장을 통합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로 대체해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원칙적으로 50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필히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둘 다 채용해야 합니다. 20~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장을 통합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는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대한산업보건협회 측으로부터 보건관리위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kiha21.or.kr)의 사업안내-> 보건관리위탁 메뉴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위탁 서비스의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따라,

- 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 ② 상시 근로자 2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며,
- ③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필수인력 선임을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위탁 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에 따라,

-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 ②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

위의 법령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은(건설업 제외) 대한산업보건협회와 같은 전문기관에 보건관리위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업보건관리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관련 전문가가 자세히 답변해드립니다.
58P <독자의 소리>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세요.

